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수원지방법원 [redacted]지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04509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1. [redacted]
	2. [redacted]시
	3. [redacted]시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redacted]에 대한 배당액 15,534,481원을 0원으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배당액 48,006원을 0원으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대한 배당액 593,92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96,414원으로 각 경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5가합828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피고 [redacted]은 C에 대한 국세 채권을, 피고[redacted]시, [redacted]시는 각 지방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의 사해행위 및 취소판결

1)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4. 12.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0.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4카단3322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5,000,00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4. 12. 12. D에 송달되었다.

3) D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아울러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공탁자를 C 또는 E로 지정하여, 2015.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 제5639호로 16,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4) 원고는 E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7. 확정되었다([redacted]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023439 판결). 위 판결의 주문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1) 주식회사 E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3 '양도채권 목록' 중 '인정된 채권액'란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적힌 금액 상당의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12. 1.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E는 C 주식회사에 별지3-1 '미변제된 양도채권 목록' 중 '인정된 채권액'란에 적힌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목록에 적힌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주식회사 E는 C 주식회사에 별지3-2 '공탁된 양도채권 목록' 중 '인정된 공탁액'란에 적힌 금액(16,000,000원) 상당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redacted]법원 2015금제5639)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redacted]에 위 각 채권을 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2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중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 등

1)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 전 피고들은 C에 대한 국세, 지방세 등 각 조세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각 [redacted]법원 2015금3638호로 2015. 12. 2.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압류권자, 압류일, 통지일 및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압류권자(채권)	압류일	통지일	청구금액
[redacted]세무서(법인세)	2016. 4. 29.	2016. 5. 11.	20,419,520원
[redacted]세무서(부가가치세)	2016. 5. 25.	2016. 6. 2.	43,345,770원
[redacted]시 [redacted]구(재산세)	2016. 6. 21.	2016. 6. 24.	260,330원
[redacted]시 [redacted]구(재산세)	2017. 2. 7.	2017. 2. 9.	2,553,3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2)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 후 2018. 10. 25.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합계 16,277,591원을 압류·전부받았다. 이러한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14. 12. 1.	C의 사해행위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E에 양도)
2014. 12. 10.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가압류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4카단3322)
2015. 12. 2.	제3채무자 D의 공탁 ([redacted]지방법원 2015금 제5639호)
2016. 4. ~ 2017. 2.	피고들의 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2018. 9. 7.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승소 확정 ([redacted]법원 2017나2023439)
2018. 10. 25.	원고의 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8타채24876)

라. 배당절차 및 이의

1)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B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9. 3. 14. 공탁금 16,000,000원에 이자 43,349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46,935원을 공제한 나머지 15,996,414원을, 피고 [redacted](처 [redacted]세무서, [redacted]세무서)에 합계 15,534,481원,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48,006원,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에 593,9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9. 3.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이 2014. 12. 1.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압류는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위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원고는 이미 C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전부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은 모두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된 후에 각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압류채권자들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 피고들의 압류는 '[redacted]법원 2015금3638호로 2015. 12. 2. 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때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①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참조), ②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D은 혼합공탁을 하면서 "(E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대적 불확지"라고 표시한바, 그렇다면 제3채무자인 D으로서도 장래에 양도인인 C에게 원상회복될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채권자들인 피고들 역시 이를 기대하고 체납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압류는 압류 당시의 C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것을 조건으로 C에게 장래 원상회복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한편, '장래 원상회복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비록 원채권인 물품대금채권에서 비롯되었으나 그와는 발생 요건과 귀속 주체, 채무자, 내용 등이 상이한 별개의 권리이고, 피고들의 압류 당시에는 발생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물품대금채권의 양도 또는 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압류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양도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그 전부명령 발령 이전에 피고들의 압류가 경합된 사실 및 피고들의 압류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3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따라서 이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